

인천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1446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래

담당변호사 김태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2.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불법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주)C과 D에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47,716,000원만 반환받음으로써 87,284,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는 (주)C과 D의 실질적 대표인 E의 처인 F로부터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범죄수익을 나누는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하므로, (주)C과 D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C과 D 또는 위 회사의 운영진과 공동으로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거나 불법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5. 15.경부터 2015. 7. 31.까지 아무 권원 없이 (주)C과 D로부터 8,5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주)C과 D에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C과 D의 채권자로서 (주)C과 D를 대위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갑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C과 D는 피고에게 2015. 5. 15.경부터 2015. 7. 31.까지 7회에 걸쳐 8,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거나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